어울고픈, 함께하고픈 미래도시 창조 공기업

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

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안)

2025. 11.

광주광역시도시공사

【도시계획팀】

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
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(안)

Ⅰ. 총 괄

평가항목	세부사항	배점	평가방법	평가기준
합 계		100		
1.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		67.6		
	(1) 자격 및 등급	14	절대평가	
	총 괄	3		○ 기술자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
	분야별책임평가자	6		
	분야별참여평가자	5		
	(2) 환경영향평가등 경력	17	절대평가	
	총 괄	4		○ 환경영향평가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
	분야별책임평가자	7		
	분야별참여평가자	6		
	(3) 환경영향평가등 실적	17	절대평가	
	총 괄	4		○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준공실적
	분야별책임평가자	7		
	분야별참여평가자	6		
	(4) 업무여유도	17	절대평가	
	총 괄	4		○ 발주기간(공고일기준 1년)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
	분야별책임평가자	7		
	분야별참여평가자	6		
	(5) 교육훈련	1.6	절대평가	○ 최근 3년간 참여평가자 환경관련 교육훈련
	(6) 과업의 이해도(前次)	1	절대평가	○ 전(前)단계 용역 참여 평가자(해당 없음)
	(7) 이적계수			○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자별 평가
2.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		32.4		
	(1)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	14	절대평가	
	(가)수행건수	7		○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준공실적
	(나)수행금액	7		
	(2) 신용도	9	절대평가	
	(가)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	6		○ 대상 : 최근1년내 평가업체, 참여평가자
	(나)재정상태 건실도	3		○ 회사채, 기업어음, 기업신용
	(3)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	6	절대평가	
	(가)개발실적	2		○ 개발건수 : 신기술, 특허, 실용신안, 연구보고서
	(나)투자실적	2		○ 투자실적 : 최근 3년간
	(다)활용실적	2		○ 활용실적 : 활용건수, 활용금액
	(4) 공동도급	1	절대평가	○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내에서 점수 부여
	(5) 업체능력평가	2.4	상대평가	○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
	(6) 하도급준수		감점	○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
	(7) 청년고용		가점	○ 신규 고용률 가점

Ⅱ.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
<table>
<tr><th>평가항목</th><th>평가요소</th><th>배점</th><th>세 부 평 가 방 법</th></tr>
<tr><td rowspan="6">1.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</td><td></td><td>[100]</td><td></td></tr>
<tr><td>(1)자격및등급</td><td>[14]</td><td></td></tr>
<tr><td>(가)총괄

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

(다)분야별 평가자</td><td>(3)

(6)

(5)</td><td>○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5의2 및 「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·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」(환경부고시)에 따라 평가한다.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환경영향평가사</th><th>해당 기술사</th><th>특급 평가자</th><th>고급 평가자</th><th>중급 평가자</th><th>초급 평가자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총괄</td><td>배점</td><td>3.0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
<tr><td>비율</td><td>100%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분야별 책임 평가자</td><td>배점</td><td>-</td><td>6.0</td><td>5.4</td><td>4.8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
<tr><td>비율</td><td>-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분야별 평가자</td><td>배점</td><td>-</td><td>5.0</td><td>5.0</td><td>5.0</td><td>4.5</td><td>4.0</td></tr>
<tr><td>비율</td><td>-</td><td>100%</td><td>100%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/tr>
</table>
※ 본 용역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 복잡사업의 기준에 따른다.
※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한다.</td></tr>
<tr><td>(2)환경영향평가등 경력</td><td>[17]</td><td></td></tr>
<tr><td>(가)총괄

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

(다)분야별 평가자</td><td>(4)

(7)

(6)</td><td>○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조제4호)과 사후환경영향조사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6조)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.
- 환경영향평가등 : 100%
(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, 소규모환경영향평가, 사후환경영향조사)
- 기타 환경분야 : 60%
(환경영향평가 등 이외의 환경분야 설계, 시공 등)
<table>
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7">경력년수</th></tr>
<tr><th>17년이상</th><th>15년이상</th><th>13년이상</th><th>10년이상</th><th>9년이상</th><th>7년이상</th><th>7년미만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총 괄</td><td>배점</td><td>4.0</td><td>3.6</td><td>3.2</td><td>2.8</td><td>2.4</td><td>2.0</td><td>1.6</td></tr>
<tr><td>비율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td>70%</td><td>60%</td><td>50%</td><td>40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분야별 책임 평가자</td><td>배점</td><td>7.0</td><td>7.0</td><td>6.3</td><td>5.6</td><td>4.9</td><td>4.2</td><td>3.5</td></tr>
<tr><td>비율</td><td>100%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td>70%</td><td>60%</td><td>50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분야별 평가자</td><td>배점</td><td>6.0</td><td>6.0</td><td>6.0</td><td>6.0</td><td>5.4</td><td>4.8</td><td>4.2</td></tr>
<tr><td>비율</td><td>100%</td><td>100%</td><td>100%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td>70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평가항목</th><th>평가요소</th><th>배점</th><th>세 부 평 가 방 법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</td><td>(3) 환경영향평가등 실적</td><td>[17]</td><td></td></tr>
<tr><td>(가)총괄

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

(다)분야별 참여평가자</td><td>4

7

6</td><td>○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.

○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
-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.
-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(전략환경영향평가) 및 환경영향평가 : 1.0
- 해당평가 외(사후환경영향조사, 소규모환경영향평가) : 0.6

○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
-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: 1.0 ([첨부 3] 참조)
- 기타사업 : 0.6

<table>
<tr><th colspan="2"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5">실적건수</th></tr>
<tr><th>15건이상</th><th>13건이상</th><th>11건이상</th><th>9건이상</th><th>9건미만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총괄</td><td>배점</td><td>4.0</td><td>3.6</td><td>3.2</td><td>2.8</td><td>2.4</td></tr>
<tr><td>비율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td>70%</td><td>60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분야별 책임평가자</td><td>배점</td><td>7.0</td><td>6.3</td><td>5.6</td><td>4.9</td><td>4.2</td></tr>
<tr><td>비율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td>70%</td><td>60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분야별 참여평가자</td><td>배점</td><td>6.0</td><td>6.0</td><td>6.0</td><td>5.4</td><td>4.8</td></tr>
<tr><td>비율</td><td>100%</td><td>100%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/tr>
</table>
※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, 검토,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</td></tr>
<tr><td>(4) 업무여유도</td><td>[17]</td><td></td></tr>
<tr><td>(가)총괄

(나)분야별 책임평가자

(다)분야별 참여평가자</td><td>4

7

6</td><td>○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(공고일기준 최대 1년)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(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)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.
※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(한글파일, E-MAIL 제출)

○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
∑[계약금액×(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/총계약기간)/10인]
※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
※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
※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

○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
배점 - 〔배점 × (1인당 중복금액 2.5억 초과금액/2.5억)〕
※ 1인당 수행금액이 5.0억 이상인 경우는 "0"점으로 평가한다.
※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※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(지분율 미고려) 금액을 의미함</td></tr>
</table>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
1.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	(5) 교육훈련	[1.6]	
			○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・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. -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: (교육이수인원/평가대상인원) × 1.6점 -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: (교육이수인원/평가대상인원) × 0.8점 ※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, 한국환경연구원,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(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.)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.
	(6) 과업의 이해도(前次)	[1]	
			○ 전(前)단계 용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업의 이해도 평가 항목의 점수는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 적용
	(7) 이적계수		
			○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: 0.8 ○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: 0.9 ○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: 1.0 ※ ①회사의 부도, 파산, 해산, 양도・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, ②이적 직전(直前)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, ③이적직전(直前)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.0을 적용한다. ※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.

<table>
<tr><th>평가항목</th><th>평가요소</th><th>배점</th><th>세 부 평 가 방 법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2.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</td><td>(1)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</td><td>[14]</td><td></td></tr>
<tr><td>(가)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

(나)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</td><td>7

7</td><td>○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.
○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
-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: 전략환경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
-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(전략환경영향평가) 및 환경영향평가 : 1.0
- 해당평가 외(사후환경영향조사, 소규모환경영향평가) : 0.6
○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
-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: 1.0([첨부 3] 참조)
- 기타사업 : 0.6
○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(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, 금액은 합산한다)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구 분</td><td colspan="5">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유사평가실적건수</td><td>복잡</td><td>15건이상</td><td>12건이상</td><td>9건이상</td><td>6건이상</td><td>6건미만</td></tr>
<tr><td>배점</td><td>7.0</td><td>6.3</td><td>5.6</td><td>4.9</td><td>4.2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유사평가실적금액</td><td>복잡</td><td>500%이상</td><td>400%이상</td><td>350%이상</td><td>300%이상</td><td>300%미만</td></tr>
<tr><td>배점</td><td>7.0</td><td>6.3</td><td>5.6</td><td>4.9</td><td>4.2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(2) 신용도</td><td>[9]</td><td></td></tr>
<tr><td>(가)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</td><td>6</td><td>○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〔별표 3〕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.
- 업무정지 : 0.2점/월 감점(거짓·부실작성, 복제는 제외하며,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)
- 거짓작성 및 복제 : 4점/건 감점, 부실작성 : 2점/건 감점
○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(계약관련법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등)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(과징금 부과처분 포함),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.2점씩 감점(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)
※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
○ 평가업체 및 참여평가자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,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평가항목</th><th>평가요소</th><th>배점</th><th>세 부 평 가 방 법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2.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</td><td>(나)재정상태 건실도</td><td>3</td><td>○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.
<table><tr><td>회사채</td><td>BBB-이상</td><td>BBB-미만
B-이상</td><td>CCC+이하</td></tr><tr><td>기업어음</td><td>A3-이상</td><td>A3-미만
B-이상</td><td>C이하</td></tr><tr><td>기업신용</td><td>BBB-이상</td><td>BBB-미만
B-이상</td><td>CCC+이하</td></tr><tr><td>대기업/중기업</td><td>3.0</td><td>2.4</td><td>2.1</td></tr><tr><td>소기업</td><td>3.0</td><td>2.7</td><td>2.4</td></tr></table>※ 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,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,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. 다만,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“0”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.</td></tr>
<tr><td>(3)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</td><td>[6]</td><td></td></tr>
<tr><td>(가)개발실적</td><td>(2)</td><td>○ 산출식 = ∑(환경분야 건당 1.0 × A × B)
※ 단,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, 이 경우 B=1.0을 적용한다.

<등급별 가중치(A)>
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신기술</td><td>특 허</td><td>실용신안</td><td>연구보고서*</td></tr><tr><td>계 수</td><td>1.0</td><td>0.6</td><td>0.3</td><td>0.1</td></tr></table>*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.
*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.

<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(B)>
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5년미만</td><td>5년이상
10년미만</td><td>10년이상
20년미만</td></tr><tr><td>특허</td><td>1.0</td><td>0.8</td><td>0.6</td></tr><tr><td>실용신안 / 연구보고서</td><td>1.0</td><td>0.8</td><td>-</td></tr></table>※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,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.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평가
항목</th><th>평가요소</th><th>배점</th><th>세 부 평 가 방 법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2.
환
경
평
가
업
체

능
력
평
가</td><td>(나)투자실적</td><td>(2)</td><td>○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
(기술개발투자액/총매출액)에 따라 계산

<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>

<table>
<tr><td>구분</td><td>1.5%이상</td><td>1.5% 미만
1.2% 이상</td><td>1.2% 미만
1.0% 이상</td><td>1.0% 미만
0.75% 이상</td><td>0.75% 미만
0.5% 이상</td></tr>
<tr><td>점수</td><td>2</td><td>1.8</td><td>1.6</td><td>1.4</td><td>1.2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(다)활용실적</td><td>(2)</td><td>○ 산출식 = ∑(환경분야 1.0×A×B×C)
※ 단,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, 이 경우 C=1.0을 적용한다.
(A) 신기술, 특허,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
(B) 등급별 계수
(C)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

<활용건수 및 금액(A)>

<table>
<tr><td>활용건수
(건)</td><td>5이상</td><td>5미만
4이상</td><td>4미만
3이상</td><td>3미만
2이상</td><td>2미만
1이상</td></tr>
<tr><td>활용금액
(억원)</td><td>20이상</td><td>20미만
18이상</td><td>18미만
16이상</td><td>16미만
14이상</td><td>14미만
12이상</td></tr>
<tr><td>가중치</td><td>100%</td><td>90%</td><td>80%</td><td>70%</td><td>60%</td></tr>
</table>
※ 활용건수,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

<등급별계수(B)>

<table>
<tr><td>구 분</td><td>신기술</td><td>특 허</td><td>실용신안</td></tr>
<tr><td>계 수</td><td>1.0</td><td>0.6</td><td>0.3</td></tr>
</table>
<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(C)>

<table>
<tr><td>구 분</td><td>5년미만</td><td>5년이상
10년미만</td><td>10년이상
20년미만</td></tr>
<tr><td>특허 / 실용신안</td><td>1.0</td><td>0.8</td><td>0.6</td></tr>
</table>
※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,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.
※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.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평가항목</th><th>평가요소</th><th>배점</th><th>세 부 평 가 방 법</th></tr>
<tr><td rowspan="7">2.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</td><td>(4) 공동도급</td><td>[1]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○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.
- 제1종업체↔제2종업체 공동도급 : 0.5 (배점한도 적용)
- 제1종업체↔소기업(1,2종 포함) 공동도급 : 0.5
※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,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.
※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%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(인원기준).
※ 중・소기업 구분은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제8조에 따른다.</td></tr>
<tr><td>(5) 업체능력평가</td><td>[2.4]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</td><td>(1.2)</td><td>○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
- 책임평가자의 기술능력(해당 용역 관련 경험, 용역수행상 주안점, 용역성공 조건, 추가 제안사항 등)에 따라 상대평가
<table>
<tr><td>구 분</td><td>수</td><td>우</td><td>미</td><td>양</td><td>가</td></tr>
<tr><td>배 점</td><td>100%</td><td>80%</td><td>60%</td><td>40%</td><td>20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(1.2)</td><td>- 책임평가자의 업무관리능력(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, 품질보증체계, 전문가 활용계획 등)에 따라 상대평가
<table>
<tr><td>구 분</td><td>수</td><td>우</td><td>미</td><td>양</td><td>가</td></tr>
<tr><td>배 점</td><td>100%</td><td>80%</td><td>60%</td><td>40%</td><td>20%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(6) 하도급 준수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○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
-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3에 의한 '벌점의 부과기준' 에 따른다.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.</td></tr>
</table>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세 부 평 가 방 법
2.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	(7) 청년고용 가점		
		0.1 0.2 0.3	○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・ 1% 이상 : 0.1점 ・ 2% 이상 : 0.2점 ・ 3% 이상 : 0.3점 ※ 신규 고용율 =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(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) /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(입찰 공고일 기준) * 소숫점 이하는 절삭 ※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(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) ※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※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(월말 기준) -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-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
	(8) 평가사 고용가점		
		없음	○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여부 따라 가점 부여 ※ 본 가점은 2023.12.31.까지 적용

※ 비고 :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

[부표]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

Ⅰ. 일반사항

1.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「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·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」(환경부고시)에 따른다.
2.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(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)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유사평가수행실적·신용도·기술개발 및 투자실적·해외평가수행실적·전차용역수행실적·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,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3.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,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4.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Ⅱ. 항목별 세부평가방법

1.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,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,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,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.
2.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·재정상태 건실도·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.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,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.
3.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.
4.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.
   -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5.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.

6.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

-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,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구 분	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
단순사업	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
복잡사업	환경영향평가(재협의 포함), 전략환경영향평가(정책계획에 한한다.)

7. 참여평가자의 구성

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1] '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' 과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5] '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' 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7인 평가,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,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. 단,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8. 참여평가자 경력산정

-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,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5]에 따른 검토 · 협의 ·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.

9. 참여평가자 실적산정

-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5]에 따른 검토 · 협의 · 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10. 업무여유도 평가

-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(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)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.

11. 민간사업 실적 인정

-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.

12. 교육훈련 인정

-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.

가. (사)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

나. 국립환경인재개발원,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. 다만,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%이하인 경우에 한한다.

Ⅲ. 상대평가 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

1.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

업체수	등 급					업체수	등 급				
	수	우	미	양	가		수	우	미	양	가
2,3	1	1	(1)			22	2	5	9	4	2
4	1	2	1			23	2	5	9	5	2
5	1	2	1	1		24	2	5	10	5	2
6	1	2	1	1	1	25	3	5	10	5	2
7	1	2	2	1	1	26	3	5	10	5	3
8	1	2	3	1	1	27	3	5	11	5	3
9	1	2	3	2	1	28	3	6	11	5	3
10	1	2	4	2	1	29	3	6	11	6	3
11	1	2	5	2	1	30	3	6	12	6	3
12	1	3	5	2	1	31	3	6	13	6	3
13	1	3	5	3	1	32	3	7	13	6	3
14	1	3	6	3	1	33	3	7	13	7	3
15	2	3	6	3	1	34	3	7	14	7	3
16	2	3	6	3	2	35	4	7	14	7	3
17	2	3	7	3	2	36	4	7	14	7	4
18	2	4	7	3	2	37	4	7	15	7	4
19	2	4	7	4	2	38	4	8	15	7	4
20	2	4	8	4	2	39	4	8	15	8	4
21	2	4	9	4	2	40	4	8	16	8	4

【첨부 1】 사업총괄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

구분	배점	지 표
수	100%	○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■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■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
우	80%	○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,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■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,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■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
미	60%	○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■ 발주청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,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■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, 일반적인(보편적인) 범주를 제시한 경우
양	40%	○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시가 부족한 경우 ■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■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
가	20%	○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없는 경우 ■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% 이상인 경우 ■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

【첨부 2】 신용평가등급 기준

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
AAA	-	AAA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)
AA+, AA0, AA-	A1	AA+, AA0, AA-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+, AA0, AA-에 준하는 등급)
A+	A2+	A+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+에 준하는 등급)
A0	A20	A0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)
A-	A2-	A-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-에 준하는 등급)
BBB+	A3+	BBB+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+에 준하는 등급)
BBB0	A30	BBB0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)
BBB-	A3-	BBB-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-에 준하는 등급)
BB+, BB0	B+	BB+, BB0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+, BB0에 준하는 등급)
BB-	B0	BB-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-에 준하는 등급)
B+, B0, B-	B-	B+, B0, B-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+, B0, B-에 준하는 등급)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(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+에 준하는 등급)

【첨부 3】 정책 및 계획,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

공 종	건설공사의 인정범위
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	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※ 사업시행근거법률,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 인정